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제도 운영 안내

① 적용지역 : 부산신항 소재 6개 부두(터미널)

적용지역		장치장부호
부두명	터미널	
신항 1부두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03077013
신항 2부두	부산신항만(주)자유무역지역	03077102
신항 3부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03077006
신항 4부두	에이치엠엠펜피에스에이신항만(주)	03077011
신항 5부두	(주)비엔씨티	03077026
신항 다목적부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주)	03077003

② 연장 승인 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천재지변으로 운영중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부산신항 부두 및 동 부두 이용 수입업체의 공장·창고 등에 한함
- ②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으로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물류대란 피해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한 경우
 - * (주소)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총장대로 20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화) 051-620-6954, (팩스) 051-620-1118, (e-Mail) busansupport@korea.kr
 - 물류대란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의 지원요청 사항 “ [3기타] ”란에 ‘부산신항 부두에 장치(보관)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기재하여 피해지원 신청
- ③ 기타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 또는 동 부두 운항선사의 파업, 수입 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압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동 부두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신청시기 및 연장기간 : 위 ② 승인기준에 해당할 경우

- (신청시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이후 신청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9일 이내 신청시에는 불승인
- (연장기간) 60일 → 30일(재연장 필요 시 추가 신청)

④ 시행시기

- '21. 10. 1. ~ 별도 안내시까지

※ 문의: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전화) 051-620-6234, (e-Mail) wch328@korea.kr